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안보 관련 예산의 분기배정 명문화〉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79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안보 및 국방 예산의 분기 배정 원칙 명문화(안 제43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

다. 회 부 일 : 2026.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 43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안보 및 국방 예산의 분기 배정 원칙 명문화 (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 예산의 배정(§43) -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배정 시 재경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 -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 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 가능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위 예산배정계획이 아니라 개별사업계획 검토 결과에 따른 예산 배정 가능 -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위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 유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조치 가능 <신 설>	○ 예산의 배정(§43)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배정유보나 집행보류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 배정</u> - <u>해당 중앙관서의 장(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한 경우 의무 배정 원칙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u>

개정안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사업과 달리 계획된 시기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현행법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¹⁾,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²⁾ 승인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순서로 예산배정이 이루어짐.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예산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한 정부의 예외적·자율적인 집행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³⁾.

1)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시배정’(제43조제4항)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제43조제5항)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제43조제5항)는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 예산배정을 유보(배정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집행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제도임.

한편, 2025년 말 국고계좌 잔고 부족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한 1조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미지급되거나 집행이 보류되어 일선 부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국가 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기획예산처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예산의 집행을 보장하여 현행법상 기획예산처 장관의 예산배정 조정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4) "국고계좌 잔고 부족 사태 발생...국방부, 방사청 지급중단", 시사연합신문사, 2026.1.9.

개정안은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 운영의 예외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군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군의 전력 및 신뢰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수시배정은 세부계획 미확정, 분담비율 미정 등 사전 집행준비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 재정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운용중이고, 배정유보는 세수부족 등 집행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으로, 기존 예산배정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예산배정 의무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재정경제부는 2025년 말 일부 국방비 미집행 문제에 대하여, 이는 예산 배정과는 무관하게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서 세출 집행률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자연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국고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데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국가안보 관련 예산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은 없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 25)에 따른 출납기한 규정에 따라 이월 집행자금 1.5조원을 2026년 1월 9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지급하였다고 설명함. 아울러 이는 2025년 세입(2026년 1월 5일까지 수납)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예산

5)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일부를 다음 연도 초에 집행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문의처

02)6788-5151